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어 린 이 제 품 안 전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위탁 업무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수리,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추가(안 시행령 제18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타부처 합의 전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법 제22조제9항”을 “법 제22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법 제22조제10항”을 “법 제2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3호”를 “법 제22조제8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4호”를 “법 제22조제8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1호”를 “법 제22조제8항제1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2조제7항제2호”를 “법 제22조제8항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22조제3항</u> 에 따른 시험 · 검사기관	2. <u>법 제22조제4항</u>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임 · 위탁)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u>법 제37조</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위임 · 위탁) ① ----- ----- <u>법 제37조제1항</u> ---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u>법 제22조제3항</u> 에 따른 시 험 · 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20. <u>법 제22조제4항</u> ----- -----
21. <u>법 제22조제9항</u> 에 따른 시 험 ·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1. <u>법 제22조제10항</u> ----- ----- -----
22. <u>법 제22조제10항</u> 에 따른 시	22. <u>법 제22조제11항</u> -----

험·검사기관의 지도·점검

23. ~ 30.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 3. (생략)

<신설>

4. 법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5. 법 제22조제7항제4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사항의 확인

<신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

23. ~ 30.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 7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수 리

5. 법 제22조제8항제3호-----
--

6. 법 제22조제8항제4호-----
--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확 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③ ----- 법 제3 7조제2항-----

관리원에 위탁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22조제7항제1호</u> 에 따라 연구 · 개발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 한 사실의 확인	3. <u>법 제22조제8항제1호</u> ----- ----- ----- -----
4. <u>법 제22조제7항제2호</u> 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 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4. <u>법 제22조제8항제2호</u>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 락 처	(043) 870 - 5574